

2026년도 제1회 인천구치소 의무직공무원 [일반임기제 5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상시 공고

인천구치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상시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구치소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일반(의무)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5급)	1명	채용일로부터 2년	인천구치소 의료과 (인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지원분야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일반(의무)	의무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5급)	○ 수용자의 건강진단, 질병 치료 등 의료 처우 업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업무 및 기타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법률 제21753호(2026. 6.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제2호
- 대통령령 제36250호(2026. 4. 7. 공포, 2026. 7. 1. 시행)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제1항제2호
- 대통령령 제36490호(2026. 6. 30. 공포, 2026. 8. 1. 시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및 별표 8(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 인사혁신처예규 제217호(2026. 6. 30.)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판단 기준일 : 본 공고의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 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정년 적용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최종시험 예정일이 다음 연도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응시 연령 및 출생일 기준을 본 공고에서 안내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부분이 2026. 10. 22.자 일부 개정 시행되므로, 최종시험예정일이 26. 10. 22.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 법령에 따라 응시 결격사유 판단

나. 직위별 개별 요건 [판단 기준일 : 본 공고의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의무 (자격증)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 ※ 해당 면허증 취득 전의 경력은 50% 인정 ○ 관련 분야 :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의료분야

※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 8(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 임용예정직위의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 내용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 자격은 자격증 요건을 적용하며, 의사면허증과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경력의 계산 및 면허 소지 여부는 본 공고에서 정하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격증의 범위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의사면허증에 한하며,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경력의 범위

- 의사면허증 취득 전 경력은 관련분야에서 실제 연구 또는 근무한 사실이 증빙되는 경력에 한하여 50%를 인정합니다.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증명서에는 근무 기간, 담당업무,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및 발급 확인자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경력 기간은 통상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단시간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합니다. 동일 기간 중 중복되는 경력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 인정 범위를 판단합니다. 검증 과정에서 시간제 경력으로 확인되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 폐업 사실 증명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보완하여야 합니다.

다. 우대요건 및 가산점

- 별도의 우대요건 및 가산점 없음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 예정 직위별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 인원에 관계없이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모두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직무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공통 질문과 평가 기준에 따른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며, 응시자에게 면접 시간을 균등하게 부여합니다.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 도달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상시 공고 및 원서접수	'26. 9. 17.(목) ~ '26. 12. 31.(목)	법무부, 나라일터, 닥터링크
본 공고 및 추가 원서접수	원서접수 시 별도 지정	추가 접수 기간 및 전형 일정 안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본 공고 시 안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면접시험	본 공고 시 안내	시간·장소 별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본 공고 시 안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상시 채용 운영 안내]

- 상시 공고 기간 중 응시 희망자의 원서가 접수되면 본 공고를 실시하여 추가 원서접수 기간과 전형 일정을 안내합니다.
- 본 공고는 해당 원서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게시하며, 최소 3일간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합니다.
- 상시 공고에 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본 공고 게시 사실을 안내하고 제출서류의 현행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시 공고 출원자는 해당 본 공고에 출원한 것으로 보며,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본 공고에 출원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시 원서접수 단계에서는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불합격 처리하지 않으며, 본 공고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나라일터 등에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6. 9. 17.(목) ~ 2026. 12. 31.(목)

방문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본 공고에 따른 추가 원서접수 기간은 별도 안내

- 원서접수 및 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응시원서는 별지서식 제2호의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 (우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총무과 인사(채용)팀

문의 전화 : 032-870-9224 / 우편 봉투에 "의무사무관 응시원서 재중" 표시

- 등기우편은 해당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일반우편·택배·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접수 시 응시표 송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와 등기 우표를 동봉하여야 하며, 동봉하지 않은 경우 응시표는 인천구치소에서 보관합니다.
- 응시원서는 법무부, 나라일터 및 닥터링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정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제출서류(각 1부)	비고
공통 필수	제출서류 목록	별지서식 제1호
공통 필수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공통 필수	이력서	별지서식 제3호
공통 필수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4호
공통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제5호
공통 필수	의사면허증 사본	필수
공통 필수	경력(재직)증명서	별지서식 제6호 또는 기관 발급 서식
공통 필수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서식 제7호
공통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8호
공통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9호
공통 필수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필수
공통 필수	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필수
공통 필수	주민등록초본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공통 필수	학위 증명서 사본	필수
해당자	전문의 자격증 사본	해당자
해당자	응시수수료 면제 증빙서류	면제 대상자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 예정 직무,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누락 또는 미비로 응시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 서류의 보완 및 현행화는 본 공고 안내에 따릅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 방법,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 기간 중 또는 본 공고의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방법은 본 공고에서 안내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과 신청 방법은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맞추어 본 공고 또는 최종합격자 공고에서 안내합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 본 공고 시 추후 안내
- 채용 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 채용 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5호	93,801	53,316

- 연봉 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련 보수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법무부 의무직 연봉 특례 제도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책정할 수 있습니다.
- 연봉 외 급여 및 수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기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구치소 총무과 인사(채용)팀(032-870-92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요지)】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별지서식 제7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구분	내용
지원 분야 / 채용 분야	일반(의무) / 의무
임용예정 직급 / 인원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5급) / 1명
근무 예정 부서	인천구치소 의료과(인천)
주요 업무	○ 수용자의 건강진단, 질병 치료 등 의료 처우 업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업무 및 기타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필요 역량	○ 공직윤리 및 책임 의식, 의사소통과 공감 능력 ○ 환자 진료 및 상황 판단 능력, 문제해결 능력 ○ 의료진 등과의 협업 및 업무조정 능력
필요 지식	○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의료분야의 전문지식 ○ 건강진단, 질병 진단·치료 및 응급환자 처치에 관한 지식 ○ 수용자 의료 처우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 ※ 해당 면허증 취득 전의 경력은 50% 인정 ○ 관련분야 :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의료분야
우대요건 및 가산점	없음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제출서류	작성·제출 안내
1. 제출서류 목록 (별지서식 제1호)	제출 여부를 표시하고 서명합니다.
2.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정부수입인지 10,000원 상당을 부착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면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3. 이력서 (별지서식 제3호)	의사면허와 관련분야 경력을 기재합니다. 면허 취득 전·후의 경력이 구분되도록 작성합니다.
4.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4호)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합니다.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제5호)	요약서 A4 1매와 본문 A4 5매 이내(총 6매 이내)로 작성하며, 작성일자과 서명을 포함합니다.
6. 의사면허증 사본 (필수)	면허번호와 취득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7. 경력(재직)증명서 (별지서식 제6호 또는 기관 발급 서식)	근무 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및 발급 확인자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재직 중인 경력은 상시 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본 공고 시 현행화합니다. 기관 발급 증명서에 필수 항목이 모두 있으면 해당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서식 제7호)	모든 응시자가 작성하고 자필 서명합니다.

제출서류	작성·제출 안내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8호)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자필 서명합니다.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9호)	각 항목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자필 서명합니다.
11.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자격 이력 확인서 중 1종을 제출합니다.
12. 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필수)	관련 경력 확인을 위한 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3. 주민등록초본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합니다. 병역사항이 표시되지 않으면 병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4. 학위 증명서 사본 (필수)	전공 및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학교명 등은 시험위원 제척·기피 등 확인에 활용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5. 전문의 자격증 사본 (해당자)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별도의 우대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응시수수료 면제 증빙서류 (면제 대상자)	해당 수급자·지원 대상자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면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제출서류 목록

성명 :

지원분야 : 일반(의무)

번호	제출서류	제출 여부
1	제출서류 목록	☐ 제출
2	응시원서	☐ 제출
3	이력서	☐ 제출
4	자기소개서	☐ 제출
5	직무수행계획서	☐ 제출
6	의사면허증 사본	☐ 제출
7	경력(재직)증명서	☐ 제출
8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제출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제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출
11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 제출
12	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 제출
13	주민등록초본	☐ 제출
14	학위 증명서 사본	☐ 제출
15	전문의 자격증 사본	☐ 제출 ☐ 해당 없음
16	응시수수료 면제 증빙서류	☐ 제출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응시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인천구치소장 귀하

본인은 인천구치소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5급) / 일반(의무)	
응시자격		자격증(의사면허 및 관련 분야 경력)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5급) / 일반(의무)	
응시자격		자격증(의사면허 및 관련 분야 경력)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인천구치소 총무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5급), 지원분야 일반(의무)
 - ② 응시자격 : 자격증(의사면허 및 관련 분야 경력)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합니다. 면제 대상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응시 자격 요건		성명	
----------	----------	----------	--	----------------	--	----	--

2. 응시자격

자격증명	취득일자	면허번호	발급기관
의사면허증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주당 시간

※ 면허 취득 전·후 경력을 구분하고 휴직기간 및 사유를 표시합니다. 면허 취득 전 경력은 50%, 단시간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일반(의무)
- ③ 응시자격요건 : 자격증(의사면허 및 관련 분야 경력)

【응시자격】

의사면허증의 취득일자·면허번호·발급기관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관련 분야의 모든 경력을 기재하되, 면허 취득일 전·후의 근무기간이 구분되도록 작성합니다.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경력은 상시 원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재하고, 본 공고 시 경력사항과 증빙서류를 현행화합니다. 응시자격 충족 여부는 본 공고의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경력(재직)증명서

구분	내용
성명 / 생년월일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대표자	
근무부서 / 직위(직급)	
근무기간(연·월·일)	. . . ~ . .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근무형태 및 주당 근무시간	☐ 전임 ☐ 비전임 / 주 시간 해당 기관의 통상 주당 근무시간 : 시간
휴직기간 및 사유	
발급 확인자	부서 : 성명 : 연락처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직인)

※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위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
제한 여부 확인

확인사항	해당 여부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예 ☐ 아니오
2.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예 ☐ 아니오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예 ☐ 아니오
3-2. 위 퇴직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 예 ☐ 아니오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 예 ☐ 아니오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 예 ☐ 아니오
4-3. 2016. 9. 30. 이후 퇴직자인지	☐ 예 ☐ 아니오
1, 2, 3-1, 3-2 모두 충족 : 제82조제1항제1호 취업제한 대상 여부	☐ 해당 ☐ 비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제82조제1항제2호 취업제한 대상 여부	☐ 해당 ☐ 비해당

※ 공직자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직원 등을 말하며, 부패행위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릅니다.
해당 기재사항은 취업제한 확인용으로만 활용되며 면접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천구치소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천구치소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천구치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제출서류 확인에 필요한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천구치소장 귀하